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임기제공무원 채용 (재)공고

동대문구에서 근무할 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4년 2월 29일

동대문구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

임용분야	임용등급	인원	근무기간	근무시간	근무예정부서	담당직무 내용
불법 주·정차 단속	시간선택제 임기제 _{마급}	1명	1년	주35시간 (1일 7시간)	주차행정과	- 불법 주·정차 단속 및 계도 - 견인대상 차량 견인지시 - 주차단속 관련 민원처리 등

※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근무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

2. 법령근거

-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제27조
-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3
-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
- 지방공무원 인사규칙(표준안)

3. 응시 자격요건

- 공통 응시자격요건
 -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,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에 해당되지 않고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.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 - 국적 :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(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 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)

응시결격사유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○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등

임용분야	직무분야 응시자격
불법 주·정차 단속 (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성별 : 제한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) ◆ 지역 :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는 자 ◆ 연령 :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 ~ 60세 미만 ◆ 자격요건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다음 자격요건 모두 해당 하는 사람 ◆ 밤샘 근무 가능한 자(평일, 주말, 공휴일 구분 없음) ◆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운전 가능한 자 ◆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※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 범위(경력증명서 상 해당 실무경력 필히 명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·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에서 단속·관리 업무(주차, 교통, 환경, 무단투기 등), 공공행정분야 사무상담 경력 </div>

4.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- 접수기간 : 2024. 3. 11.(월) ~ 3. 13.(수) (09:00~18:00, 근무시간에 한함)
- 접수방법 : 본인 방문접수(대리인 방문시 사전 문의)
- 접수장소 : 동대문구청 5층 행정지원과 ※ 중식시간(12:00 ~ 13:00) 중 접수불가

○ 시험일정
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공고	면접시험		면접합격자 발표
	일시	장소	
2024. 3. 14.(목) (홈페이지 게시)	2024. 3. 15.(금) [예정]	지하1층 제2회의실 [예정]	2024. 3. 19.(화) 예정 (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보)

※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,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

가. 1차시험 : 서류전형(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을 심사하여 적격자 선발)

-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 여부를 서면 심사
- 단,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내부기준에 의거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.

나. 2차시험 : 면접시험(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)

-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직무수행에 따른 자격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
- 면접시험 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,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면접시험 평정표 상의 상위 항목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

5. 보수수준

- 연 봉 :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에 의거 임기제공무원 각 급(상당) 하한액을 원칙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
- 수 당: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당 별도 지급

6. 제출서류

- ① 응시원서 1부.
 - 응시수수료(동대문구청 6층 재무과)
 - 마감 : 5,000원 상당의 동대문구 수입증지 인증
- ② 이력서 1부. (채용분야별 자격/면허조건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,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 등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, 증명이 안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)
- ③ 자기소개서 1부.
-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.(임용예정직위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·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자유롭게 기술)
-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.
- ⑥ 가족채용제한여부 확인서 1부.
- ⑦ 개인정보제공·이용 동의서 1부.

※ ①, ②, ③, ④, ⑤, ⑥, ⑦ 는 접수처에 비치 또는 동대문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
⑧ 최종학력증명서 1부.

-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

⑨ 채용예정 직무분야 자격증 사본 1부.(원서 제출 시 “원본지참”)

⑩ **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(원본)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**

- 경력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행 또는 별도의 유효기간 내의 원본제출 시만 인정

- 근무기간,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(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

-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,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.

-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(담당업무 미기재 등) 등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

- 회사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, 관련 경력을 입증할 다른 서류(근로약정서, 인사기록카드, 업무분장내역 등)로 보완해야 하며, 보완서류 중 ‘폐업 사실증명서’, ‘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(건강, 국민, 고용, 산재) 중 1종’ 및 ‘소득금액증명서’도 필수 제출

(근로약정서, 인사기록카드, 업무분장내역 등 업무내용기재 사항, 폐업사실증명서,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, 소득금액증명서 등 제출하며 경력인정을 위하여 추가 서류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)

- 외국기간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(채용분야와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,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(근로약정서, 인사기록카드, 업무분장내역 등)를 첨부하여야 함)

※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에 채용예정 직무분야 담당업무 내용이 기재가 안될 경우, 반드시 ⑪ 경력사실 확인증명서 추가 제출

⑪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1부.(해당자에 한함)

: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채용예정 직무분야 담당업무 내용이 기재가 안될 경우 제출

※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 첨부하고, 관련 서류는 상기순서와 같이 편철하여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(스테플러 사용 금지)

※ 상기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7. 응시자 주의사항

○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정확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, 중복지원은 할 수 없습니다.

○ 응시원서 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,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
-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동대문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-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,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고, 접수기간 이후에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.
-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·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.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(없을 경우 포함)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-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,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.
- 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시간 20분 전까지 주민등록증, 응시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로 와서 시험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.
-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,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됩니다.
- 최종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합격취소, 결격사유,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채용분야 직무관련 문의
 - ◆ 불법 주·정차 단속 채용 : 동대문구 주차행정과 (☎ 2127-4480)
 - 그 외 채용시험관련 문의 : 동대문구 행정지원과 (☎ 2127-4032)